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청년인턴 채용 공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행정분야, 총29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지역	근무기관	접수처
인턴1	행정	6	동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033-680-2416 (동해지방청 기획운영과) qudwn1328@korea. kr
인턴2		6	속초	속초해양경찰서	
인턴3		6	동해	동해해양경찰서	
인턴4		4	울진	울진해양경찰서	
인턴5		7	포항	포항해양경찰서	

※ 지원서 접수처로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

※ 하나의 지원코드에 대해서만 지원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24. 4월~10월 예정)
- (보 수) 월 2,060,740원
 -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는 보수에서 공제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출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

나. 주요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분야	주요업무
인턴1	행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행사, 기록물 관리 등 행정 업무지원 ▶ 정책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 운영 등 홍보업무 ▶ 전산·통계, 데이터 정보 등 관리 지원 ▶ 국내·외 해양 관련 자료 모니터링 및 조사 정리
인턴2		
인턴3		
인턴4		
인턴5		

※ 담당업무는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해양경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칙」 제17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 결격사유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해당자에 한함)

지원코드	항 목	우 대 요 건
인턴1	전공 및 자격증	①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 관련학과 : 법학, 경찰행정학, 행정학, 언론홍보, 광고홍보, 그래픽디자인, 영상제작, 편집, 산업공학, 컴퓨터 공학, 전산, 해양, 건축, 외국어, 응급구조 등 ②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디자인 및 전산, 정보통신, 통계, 건축 등 관련 자격증과 외국어 자격증
인턴2	전공 및 자격증	
인턴3	전공 및 자격증	
인턴4	전공 및 자격증	
인턴5	전공 및 자격증	

다. 가산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해당자에 한함)

- (대 상 자)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가산요건 지원대상

1. 취업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관련 법률 및 부여가점

-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1호 : 10점, 2호 : 5점)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1,2,4호 : 10점, 3,5호 : 5점)
-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1,2,4호 : 10점, 3,5호 : 5점)
-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1,2,4호 : 10점, 3,5호 : 5점)
-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제1항(1호 : 10점, 2,3호 : 5점)
-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1,2호 : 10점, 3호 : 5점)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자기소개서, 2.우대요건, 3.가산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①(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4. 3. 11.(월) ~ 3. 21.(목)
- 원서접수 : 2024. 3. 11.(월) ~ 3. 21.(목)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4. 2.(화) 예정
- 면접시험일 : 2024. 4. 5.(금) ~ 4. 9.(화) 예정
 - ※ 면접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4. 15.(월)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합격자 발표 후, 합격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제출기간 : 2024. 3. 11.(월) ~ 3. 21.(목) 18:00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24. 3.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개별 발송 예정)

- e-mail 제출서류는 자필 서명하여 반드시 PDF(1개 파일로 스캔)로 제출,

※ mail 제목은 “성명(지원코드)[예 : 홍길동(인턴1)]으로 기재

원서 접수기관	일반전화	이메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033) 680-2416,2716	qudwn1328@korea.kr

다. 서류제출 주의사항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접수한 메일로 접수확인 회신 예정으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필수
- 제출 필요 서류 누락 및 서명이 없을경우 미제출로 간주하여 안내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안내

연번	제 출 서 류	대 상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자 전원	별지서식1
2	응시원서	응시자 전원	별지서식2
3	자기소개서	응시자 전원	별지서식3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응시자 전원	별지서식4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응시자 전원	별지서식5
6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응시자 전원	별지서식6
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법무부용, 국적확인)	응시자 전원	별지서식7
8	주민등록초본 ※ 남녀모두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응시자 전원	-
9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응시자 전원	별지서식8
10	졸업증명서(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자	-
11	가산요건 관련 증명서	해당자	-

<1.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주의사항>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현 주소지만 나오도록 발급(주소지 이전 사항이 모두 나올 필요는 없음)
-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가리거나 *로 표기되도록 발급(000000-0*****)

<2. 졸업증명서(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시 알림사항>

- 해당자에 한하며, 전공분야 표시
- 해외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6. 유의 사항

-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청년인턴 채용 일정 등 고려 하나의 기관만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033-680-2416, 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칙」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지서식 제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 담당자 기재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 파일명 예시: "성명(지원코드)[예 : 홍길동(인턴1)]으로 기재

목 록	제출	미제출
<필수사항>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2. 응시원서		
3. 자기소개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남녀 모두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7.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법무부용, 국적확인)		
9.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함	
1. (학위) 학위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등) 사본 (부)		
2. (취업지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행정)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1 / 채용분야 : 행정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우대 및 가산요건 :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미기재	성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	-----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지원동기

채용분야 및 지원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지원동기 등 기재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태도 등 기재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업무와 관련 된 지식, 개인적 경험, 경력사항 등 기재

2024년 월 일

작성 자

(서명)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생년월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4 . . .

성명 : (서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법무부용, 국적확인)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으로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본인 (*는 필수 입력 사항임)

- | | | | |
|------------|------------------|----------|-------|
| ▪ 성 명 * | (서명) | ▪ 생년월일 *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 e-mail * | | | |
| ▪ 직 장 | | ▪ 직 위 | |
| ▪ 직장전화 | | ▪ 연락팩스 |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출입국 및 국적자료 ----- 법무부

<별지서식 제8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